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24. 8. .

제 출 자 : 하남시장(보건정책과)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2024. 11. 23. 시행)으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 주체를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발급 수수료(3천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별표2)
- 보건지소(미사보건센터)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권고 용어 등 정비함(안 제2조,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정한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3천원을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규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됨.